

노동조합소식

☎ 868-8133 Fax. 868-8136



www.penlu.or.kr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발행인 : 이 영 호
편집인 : 장 성 호

2006 제1차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2006.8.25.(금). 2006 제1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부산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노동조합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매우 큰 뜻 깊은 행사로서 대의원 모두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회의 안건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관한 건」과 「노동조합 규약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2006년도 단체교섭요구안 승인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2006회계년도 예산은 총규모가 195,442,000 원으로 수입은 조합비와 후원금, 기부금, 사무실

부대시설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조합 운영경비와 조직 강화 사업비, 회원 후생복지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노동조합규약변경에 관한 건은 노동조합 출범 당시 규약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나 출범이후의 연합단체 가입, 운영위원회 임원의 구성과 직무, 그리고 사무처 구성부분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2006년도 교섭요구(안)에 대한 승인건」의 경우는 대의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대회 몇일 전에 배부한 관계로, 많은 의견들이 개진 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약 3개월 동안 심사숙고하여 완성되었을 뿐만아니라, 내용 하나하나가 그 동안 모두가 공감해온 사안들인 까닭에 큰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서는 2006.8.28(월). 교육감에게 2006년도 교섭요구를 통보하였습니다.

단체교섭의 향후 절차는 교육감은 교섭요구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타 노동조합은 7일 이내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교섭요구기간이 만료된 후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를 공고하고, 우리노동조합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통보하여야 하는데, 교섭노동조합이 2이상의 경우 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20일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임을 하게 됩니다. 선임통보가 있는 후 지체 없이 교섭내용·교섭일시·교섭장소 그 밖의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마무리 되면 교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 기타,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된 각(안)별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 중지 요구

2006. 8. 3(목) 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행한 「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교육감에게 시행거부와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급변 계획은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임용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지방 교육행정 자치사무를 크게 훼손"한 일방적 지시와 다름없고, 정원의 증원은 물론 인건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음으로서 지금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 시킬 뿐만아니라, 교원의 사기진작만을 고려하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편협적이고 졸속으로 입안된 계획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감에게 계획추진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ILO 아태지역총회 부산 BEXCO에서 열려.....

후안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공무원 단결권 제한」"안돼"

제14차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지역총회가 지난 8월 29일에서 9월 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총회는 아태지역사무소가 있는 태국에서 열렸으나, 태국 이외 회원국에서 개최되기는 이번 부산총회가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노동권 신장에 힘써온 결과라는 평가와 앞으로 노동외교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안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한국사회는 독재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상황에 놓여있고, 특히 정부나 경찰에 의한 노동탄압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통용되던 관행의 연장선"이라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의 노-정 갈등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의 특성 상 파업권의 제한은 일정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단결권과 파업권의 구분은 명확해야 하며, 단결권의 제약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가입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허용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지역총회를 계기로 우리정부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대 교육위원님들께 바랍니다 !

「제5대 교육위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1999.9.1 초대 교육위원회가 개원한 이후, 5번째를 맞이하는 「제5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06.9.1자로 개원하였습니다.

매번 새로운 교육위원회가 탄생될 때마다 학부모는 물론 교육가족들 모두는 교육위원회에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는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권한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는 시민의 대표 지위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우리 교육청 부채가 매년 증가하여 마침내 2,8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성예산의 대폭 축소는 물론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초긴축 예산편성으로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제5대 교육위원회에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교육위원회가 해온 견제와 감시 역할에는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은 얼마나 제시하였는지 깊은 반성과 고민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하루빨리 우리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튼튼한 구조로 탈바꿈하여 부산교육이 세계속의 중심으로 거듭나는데 재정이 발목을 잡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그동안 소외 받아 온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과 복리의 향상과 증진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임원 및 지부장 · 대의원 현황

이미 제2호 소식지로 공고된 바와 같이 2006.8.4(금)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18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대의원 및 지부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진행된 지부장과 대의원이 선출은 2006. 7. 24 ~ 7. 28.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대다수 지부에서는 정원범위 내에서 등록이 되었고, 동부 지부장은 2명의 후보가 경합이 되어 선거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서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이 모두 갖추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임원 명단 ▷

직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근무부서
위 원 장	이 영 호	전 임	부 위 원 장	주 진 선	북부교육청	부 위 원 장	정 수 철	시민도서관
수석부위원장	편 경 천	동부교육청		김 정 희	시교육청		이 한 근	어린이회관
부 위 원 장	김 수 근	시교육청		김 미 희	서부교육청	사 무 총 장	장 성 호	시교육청
	박 영 만	부산여고		오 상 열	해운대도서관	사 무 차 장	김 순 익	시교육청
	홍 순 근	산업학교		정 일 환	동부교육청	회계감사위원장	전 기 재	시교육청
	손 기 훈	체육고		김 종 규	남 일 고			

◁ 임원 명단 ▷

지부별	직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근무부서
본 청	지부장	이운용	시 교육 청	대의원	태유정	시 교육 청	대의원	문형철	어린이 회관
	대의원	장용규	시 교육 청		방종국	학생교육원		류수용	학생교육문화회관
		안중희	시 교육 청		강일도	교육연수원			
도 서 관	지부장	정원우	학부모교육원	대의원	이영애	시민도서관	대의원	김종형	중앙도서관
	대의원	김성득	시민도서관		정종상	시민도서관		하용숙	중앙도서관
		김용수	시민도서관		박종근	중앙도서관		배대희	부전도서관
동 부	지부장	박종철	당 감 초 등	대의원	김명구	가 평 초 등	대의원	신인숙	동부교육청
	대의원	송숙이	광 무 여 중		이태오	전 포 초 등		민문옥	동부교육청
		김평순	부산진여중		박혜영	연 서 초 등		김미연	동부교육청
서 부	지부장	이희수	사 하 중	대의원	김희조	경 남 고	대의원	이정민	태 종 태 중
	대의원	한석철	서부교육청		송효상	감 천 초		이상명	다 선 초
		김동주	서부교육청		김태호	혜 송 학 교			
남 부	지부장	장홍시	남부교육청	대의원	하대인	범 일 초 등	대의원	정순영	대 연 초 등
	대의원	이경진	용 문 초 등		구모신	분 포 초 등			
북 부	지부장	정영식	백 양 초 등	대의원	민의기	북부교육청	대의원	박기목	서부산공고
	대의원	문영호	북부교육청		신애숙	대 저 초 등		김진석	모 동 중
		신은옥	북부교육청						
동 래	지부장	김문성	청 룡 초 등	대의원	김성태	동래교육청	대의원	박계옥	윤 산 중
	대의원	문순녀	동래교육청		김인준	동래교육청		안영리	안 락 초 등
		차영숙	동래교육청		김동관	총 렬 중		이상기	전 자 공 고
해 운 대	지부장	김환식	좌 산 초 등	대의원	최진범	해운대교육청	대의원	강정숙	양 운 고
	대의원	서정수	해운대교육청		한종일	부 흥 초 등		조동대	민 안 초 등
		김정옥	해운대교육청		제영진	대 청 중		최두섭	해운대교육청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마침내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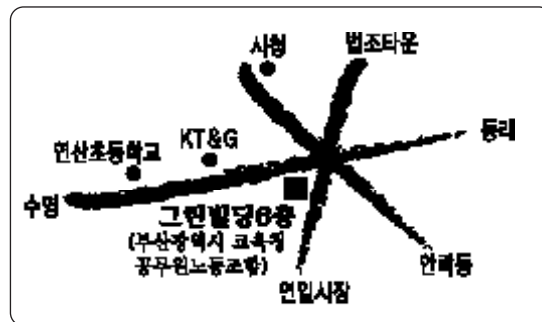
우리 공무원들의 지대한 관심과 활발한 참여 속에 조합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일반직과 기능직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어루만져 주는 바람직한 직장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노동조합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교노」의 문은 어느 분에게나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를 필요로 하거나 찾는 분이 계시면 언제, 어디든지 항상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 <가입서> - 노동조합 홈페이지(www.penlu.or.kr)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조합비> - 월 1만원(급여에서 원천징수, 급여공제코드 J14)
- <보내실곳>

공무원노동조합 (Fax 868-8136)	본청 소속기관 : 시교육청 총무과 이운용 지부장
동부교육청소속기관 : 당감초등학교 박종철 지부장	서부교육청소속기관 : 사하중학교 이희수 지부장
남부교육청소속기관 : 남부 평체과 장홍식 지부장	북부교육청소속기관 : 백양초등학교 정영식 지부장
동래교육청소속기관 : 청룡초등학교 김문성 지부장	해운대교육청소속기관 : 좌산초등학교 김환식 지부장



단체교섭 요구 내용

전 문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지방공무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 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조례·규칙·규정의 제·개정】 교육감은 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관계 조례·규칙·규정의 제·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① 교육감은 본 협약과 지방공무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어떠한 이유로도 기존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또한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기존의 협약이 정한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단체협약의 이행의무】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상·하반기 4월과 10월말까지 단체협약 이행실태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③ 교육감은 단체협약 및 정책협약의 합의 사항을 체결 즉시 공문으로 시행하고, 기관장과 그 소속직원에게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교육현안,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실시한다.

② 협의회 운영방법은 안건별 해당부서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소위 수준 2회, 교섭위 수준 2회로 한다.

제 2 장 노동 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개입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간에 개최되는 협의회 참석
3.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정기 및 임시 대의원 대회 참석
4. 연대조직의 회의 및 행사 참석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한다.

1. 홍보활동을 위한 게시판을 각급 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치·이용하도록 지도한다.
2. 공무원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인쇄물이 해당학교 조합원에게 전달·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공무원노동조합전임자가 소속기관에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기관장과 협의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청의 소속기관(지역교육청, 각급학교)이 공무원노동조합이 생산한 각종 문서를 성실히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을 할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합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 범위로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에 1시간 이상의 공무원 노동조합 홍보시간을 노동조합에 부여한다.

③ 교육감은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관장하는 공무원 연수기관의 신규직원 연수 및 기타 직무연수에 공무원 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개설·운영 하도록 한다.

제7조【시설 등 편의 제공】 ① 교육감은 공무원노동조합

에게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전용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임차사무실에 대한 적정한 임차예산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문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④ 교육감은 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한다.

제8조【문서열람, 자료 및 정보 공개】 교육감은 노동조합에서 관계문서 및 자료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관계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제9조【통지의 협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에 통지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폐, 교육 관련 입법 예고사항
2. 공무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교육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5. 소속기관에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제10조【타 노동조합과 교섭시 사전협의】 ① 교육감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각급학교 행정실 소관업무나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원단체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업무경감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한다. 비교섭대상 및 위법적 교섭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이는 자동 무효로 한다.

제 3 장 근무여건 개선

제11조【위법·부당하게 이관된 업무 원상회복】 ① 2002. 12. 24. 교육감과 교원단체 간의 단체협약 내용 중 제40조의 사항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위반되는 위법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이 조문으로 인해 행정실로 이관된 부당한 업무는 해당교사에게 원상회복토록 지도한다.

② 기타 교육감과 교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지방공무원과 행정실(과)로 위법·부당하게 이관된 업무는 원상회복되도록 지도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업무경감 방안 마련 시행】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교원상훈, 교원복무 업무는 교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실(과)에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위하여 가칭 "부산광역시 학교 업무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라 교무영역, 교무행정영역, 행정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사무분장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표준안을 제정 각급학교에 적용한다.

제13조【사서직 인력 충원】 교육감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된 바의 기준에 따라 소속도서관의 사서직을 충원하도록 한다.

제14조【대체인력 지원】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휴직, 병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1항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등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또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한다.

제15조【근무시간 개선】 교육감은 개교기념일, 방학 등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휴업하는 경우 학교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각급학교 주 40시간제 시행】 교육감은 교육청 및 각급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의 주 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의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때까지 근무 토요일에는 최소인원에 의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휴무토요일에는 휴무한다.

제17조【사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연차적으로 행정실(66㎡ 이상)과 휴게실(33㎡ 이상)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전 공무원에게 1인 1 PC를 보급하고, 시설관리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파복을 지급한다.

제18조【도서관 운영방법 개선】 교육감은 교육청 및 각급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의 주 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도서관의 18:00 이후 자료실 연장 운영을 폐지한다.
2. 도서관의 휴관일을 매월 토·일요일로 변경한다.

제19조【지방공무원의 호칭 개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보직이 없는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0조【차·다과 등 접대 문화개선】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누구나가 차(다과) 접대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시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지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행사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실(과) 지방공무원이 다과를 준비하게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행사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제21조【기관단위의 봉사활동 할당 등 금지】 교육감은 시교육청 및 소속기관(부서 포함) 단위의 의무적, 획일적, 할당적 또는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22조【부산교육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제의 장을 만들어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한마음체육대회를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 4 장 처우 개선

제23조【관리수당 및 업무추진비의 지급 확대】 ① 교육감은 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을 초등학교 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토록 한다.

② 방과후 수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방과후 수업으로 인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도 관리수당을 지급한다.

③ 각급학교의 행정실(과)장과 교감에게도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동일한 성격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④ 각급학교의 부서업무추진비는 행정실(과)와 교무실 단위로 이원화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은 각 부서장의 계획에 의하도록 한다.

⑤ 상기 항의 지급단가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학교회계세출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다.

제24조【교원복지대여 확대】 교육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대여해 주고 있는 전세자금과 자녀 결혼자금 이자의 절반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5조【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①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연차별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축소한다.

②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임용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기능직공무원 직급 정원 조정 및 일반승진 실시】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방공무원의 정원 규칙을 개정하고, 직급별 정원기준에 맞는 인원 확보를 위해 승진임용을 실시한다.

제27조【기능직공무원의 자리 배치 등】 교육감은 소속기관 각 부서의 직원 좌석배치 등에 있어 직군에 구애됨이 없이 경력과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8조【기능직공무원의 교육 및 표창기회 확대】 ①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하게 직무 및 교양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표창과 관련하여 대상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능직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정한다.

제29조【운전직렬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업무용 차량 운전원들에게 공문서 전달, 은행업무 등 고유업무로서의 차량운전 외의 기타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내여비를 지급한다.

제 5 장 인사제도 개선

제30조【조직·인력의 적정 배분】 ① 교육감은 산하 전체조직에 대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감은 초등학교 행정과장으로는 반드시 일반직 6급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직 7급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배치한다.

③ 교육감은 초등학교 행정실에 일반직을 2인 이상으로 배치한다

④ 교육감은 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지역교육청 학무국(과)에 배치된 지방공무원 중 장학사 업무경감을 위해 배치된 공무원은 장학사 또는 교원으로 대체하고, 지방공무원이 부족한 기관 또는 부서에 충원한다.

제31조【보직관리규정 정비】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공정한 보직관리를 위하여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동수로 참여하는 "보직관리규정 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정비하여 차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2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기준 수립】 교육감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의 30%이상을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인사기준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33조【다면평가, 승진심사 기준 수립 및 위원구성 등】 ① 교육감은 인사, 직위공모, 승진심사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다면평가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승진과 관련된 심사나 평가 시 심사(평가)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와 평가의 전 과정에 노동조합에

서 추천하는 조합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교육감은 근무성적 평정 시 평정 분포비율을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과 학교를 구분하되, 정원비율로서 정한다. 단, 종전의 인사제도의 신뢰성과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 1. 1.부터 3년간 점차적으로 시행한다.

제35조[사무관승진제도의 방법 개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험 또는 심사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통일한다.

제36조[기술직공무원의 각급학교 행정직 직위 보임]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훈령제106호) 제15조(기술직공무원 보직관리)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직공무원도 각급학교 행정직 직위로 보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제37조[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인사기준을 급지를 정하여 공정한 순환근무가 되도록 개선·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 전보 인사작업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조합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③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및 인계인수를 위해 최소한 시교육청은 10일전에 지역교육청은 7일전에 인사발령 사항을 발표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에의 경우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인사일정 등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 6장 행정 제도 개선

제38조[학교 하부조직 설치 근거 마련]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관행적 하부조직 즉 행정실과 교무실을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한다.

제39조[행정실·과 명칭 통합] 교육감은 공립 각급학교의 행정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행정실 또는 행정과 구분 명칭을 "행정실"로 통일한다.

제40조[홈페이지 사무분장 및 교육수첩 발간 시 직위(직명) 삭제] ① 교육감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사무분장 및 교육수첩 발간 시 직위(직명) 표시를 삭제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 지방공무원 모두를 포함하는 명부를 매년 초에 발간하여 기관별 부서별로 보급하도록 한다.

제41조[구포도서관 직제 명칭 환원] 교육감은 구포도서관의 "평생학습과"를 "열람과"로 변경한다.

제42조[교육청내 도서관팀 신설] 교육감은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내에 "도서관팀"을 신설한다.

제43조[지방공무원 가산점 제도 도입] ① 교육감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근무지 가산점 제도를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행정실 직원들에게도 부여한다.

제44조[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제도의 개정] 교육감은 행정실(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제45조[학교 단위 전자결재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결재시간 단축을 통한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전자결재를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46조[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방법 개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보상금 지급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결과만 해당학교에 통보한다.

제47조[학교급식품 공동구매 개선] 교육감은 학교급식품 공동구매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제 7장 교육재정 운영 개선

제48조[예산집행의 적정성] ① 교육감은 학교예산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달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사의 잡지, 연감 등의 구매나 각종 협의회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와 같은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실험실습비, 학습준비물 등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획일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기준을 폐지한다.

④ 학생수 800명 이하의 초·중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소규모 도서관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한다.

제49조[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교육감은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방법으로 분기별로 공개한다.

제50조[도서관 예산지원 방안 강구] 교육감은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전산장비가 적정시기에 교체 될 수 있도록 노후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

제51조[예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립]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중 건물유지비 유보액을 사용할 경우 예산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배부기준 및 대상기관, 지원액, 지원내용 등을 사전에 각 교

육청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기관 및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중복지원을 억제한다.

제52조[기설학교 시설 여건 개선] 교육감은 최근 신설된 학교와 기설학교와의 시설격차 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간 교육환경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한다.

제53조[학교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기준 수립] 교육감은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의 적정선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운영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한다.

제54조[학교회계 집행의 합리성 보장] 교육감은 학교회계 집행에 있어 회계담당공무원이 물품구매나 용역 등의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 고유업무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 회계집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8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제55조[국외연수 확대]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테마연수 등 국외연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급간 [상위직(5급이상), 하위직(6급 이하)], 근무기관 간, 직렬간 추천비율을 안배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제56조[공무원노동조합 주관 행사 지원]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세미나 및 교육행정연구 등의 교육행정부문에 대한 각종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 9장 교육인적자원부 등 상급기관 요구 사항

교육감은 교육감의 재량이 미치지 못하는 다음의 정부부처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권익과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당부처에 그 개선을 요구한다.

1. 국가공무원(1년~6월)과 지방공무원(6월)에게 차등 적용되고 있는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휴가 기간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한다.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년이 단일화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0 조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 요구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 요구한다.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제2항에 의한 근속승진 소요연수가 단축 되도록 한다.

6.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중 10급을 폐지하도록 하고, 5급 이상의 직급을 확보하도록 한다.

7. 기능직 공무원의 직군과 직렬 구분 중 "사무보조"를 "사무"로 개정한다.

8.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선한다.

9.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11]의2. 자.에 의한 교직수당을 교직원수당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의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10. 토·일요일 근무가 계속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대체휴무와는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11. 성과상여금을 총 지급액의 80%는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수당으로 균등 지급하고, 20%는 당해연도 우수공무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한다.

12. 성과상여금의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되 노동조합과 협의 하도록 한다.

13.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 "교원안전망구축"을 "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14. 공무원의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 인정 환산율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을 개정토록 한다.

15. 지방공무원 승진 시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이 정하는 바에 의해 1~2호봉 삭감되는 호봉제도를 삭감되지 않도록 개선 한다.

16. 공무원의 호봉이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1일자로 승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달 1일자로 승급하도록 개선한다.

17. 공무원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해당 봉급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호봉에 있어 최대호봉이 공무원별 차이가 없도록 개선한다.

18. 공무원의 유사경력을 근무년수에 산입하도록 지방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을 개정토록 한다.

19. 여성공무원이 자녀양육, 임신, 출산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를 적용하여 자녀 1인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20. 현행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상의 제3호와 제4호의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협약갱신】 교육감과 공무원노동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감과 공무원노동조합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른다.

제5조【협약서 작성·보관 및 신고】 본 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6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교육감과 공무원노동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씩 신고한다.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 편성 내역

㉠ 세입 (단위 : 천원)

계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부대시설 지원금	기 타 수익금
195,442	173,400	6,000	370	15,422	250

㉡ 세출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일 반 운영비	조직강화 사 업 비	회 원 복리비	예비비
195,442	74,400	46,282	67,200	6,000	1,560

◆ 세입 예산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세입 항목	산 출 내 역
조합비	10,000 × 1,445명 × 12월 = 173,400
후원금	후원금 수입 6,000
기부금	370
부대시설지원금	교육청 지원금 15,422
기타수익금	250
계	195,442

◆ 세출 예산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세출 항목	산 출 내 역
인건비	전임자보수 5,200,000 × 12 = 62,400
	사무실상근직 1,000,000 × 12 = 12,000
일 반 운영비	사무실운영비(기본비품 및 소모품) 1,550,000 × 12 = 18,600
	전기요금 300,000 × 12 = 3,600
	전화요금 200,000 × 12 = 2,400
	수도요금 100,000 × 12 = 1,200
	신문요금 40,000 × 12 = 480
	월세및관리비 380,000 × 12 = 4,560
	사무실부대시설비(교육청지원금) 15,442,000 × 1 = 15,442
조직강화 사업비	지부조직강화활동비 1,500,000 × 12 = 18,000
	운영위원회운영비 및 재교육비 500,000 × 12 = 6,000
	대의원대회소요경비 1,500,000 × 4 = 6,000
	대의원 및 조합원 수련회 3,000,000 × 2 = 6,000
	고문번호사수임료 100,000 × 12 = 1,200
	소식지발간 550,000 × 12 = 6,600
	출장여비 400,000 × 12 = 4,800
	업무추진비 500,000 × 12 = 6,000
	조직강화활동 차량유지비 300,000 × 12 = 3,600
	연맹분담금 750,000 × 12 = 9,000
	회원복리비 조합원 경조사비 500,000 × 12 = 6,000
예비비 예산의 10% 이내 1,560	
계 195,442	

부산광역시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일부 변경

기 존	변 경
<p>제6조(단체가입·결성) ① 조합은 대정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위하여 상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국내·외 타 노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p>	<p>제6조(단체가입·결성) ① 조합은 대정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위하여 상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국내·외 타 노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p> <p>③(신설) 조합은 상위 노동조합으로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p>
<p>제2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p>제2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u>사무차장</u>,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p>제22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사무총장을 둔다</u></p>	<p>제22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둔다.</u></p>
<p>제40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8명 4. 사무총장 1명 5. 사무처 각실·국장 7명 6. 지부장 8명 	<p>제40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12명 4. 사무총장 1명 5. 사무차장 1명 6. 회계감사위원장 1명 7. 사무처 각실·국장 6명 8. 지부장 8명
<p>제41조(임원의 직무)</p> <p>③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정책기획실장, 교섭조직국장, 여성국장, 복지교육국장, 문화편집국장, 대외협력국장 등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2. 예산의 집행과 조합비의 출납사무를 관리한다. 3. 기금 및 자산을 관리한다. 	<p>제41조(임원의 직무)</p> <p>③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정책기획실장, 교섭조직국장, 여성국장, 복지교육국장, 문화편집국장, 대외협력국장 등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2. 예산의 집행과 조합비의 출납사무를 관리한다. 3. 기금 및 자산을 관리한다. 4.(신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p>제42조(임원의 선출)</p> <p>② 제40조 제2호 내지 <u>5호</u>의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42조(임원의 선출)</p> <p>② 제40조 제2호 내지 <u>7호</u>의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p>